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106
----------	-----

2023. 2. 16.
운영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3. 2. 3. 김진경 의원 등 13명

나. 상정의결

- 제309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2023. 2. 16.)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구의원 : 김진경)

가. 제안이유

- 강남구의회 심사대상인 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 및 전문 등 주요내용을 예고하여 지역주민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조례안 심사에 대해 주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도록 함으로써 주민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안 예고에 대한 조문 신설(안 제18조의 4)

다. 참고사항

- 관계법규: 「지방자치법」 제77조
- 예산조치: 해당 없음
- 입법예고: 해당 없음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구경남)

- 「행정절차법」 제41조¹⁾에서 행정청은 법령등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 시에 예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인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²⁾에서는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 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법령 이외 사항은 조례에 위임하고 있음.
- 이에 근거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가 있으며 법령에서는 행정청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만 입법예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한편, 「지방자치법」 제77조³⁾에서 지방의회는 심사대상인 조례안에

1) 행정절차법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① 법령등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이하 “입법”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입법안을 마련한 행정청은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신속한 국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2. 상위 법령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3.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4. 단순한 표현·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법제운영 업무규정

제20조(자치법규안 입법예고)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입법예고를 하는 경우 공보 외에도 신문, 인터넷, 방송,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 또는 기관의 간행물 등을 활용하여 입법할 내용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입법예고를 하는 경우 자치법규안의 주요 내용, 제출의견 접수기관, 의견제출 기간,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등을 명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예고할 내용의 전문(신·구조문대비표를 포함한다)을 게재하여야 한다.

③ 자치법규안에 대한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의 처리 및 그 처리 결과 등의 통지에 관하여는 제18조제1항을 준용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3) 지방자치법(개정되기 전 제66조의2)

제77조(조례안 예고) ① 지방의회는 심사대상인 조례안에 대하여 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지, 주요 내용, 전문을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예고할 수 있다.

② 조례안 예고의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대해 조례안 예고를 회의규칙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2011. 7. 14. 신설되었음.

- **입법예고나 조례안 예고**는 주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수렴을 통하여 입법에 반영하려는 제도로 입법예고는 행정청과 자치단체 장에게 부과된 의무규정이나 조례안 예고는 지방의회의 임의규정으로 운영되는 바 현재 강남구의회를 제외하고는 서울의 모든 자치구의회가 회의규칙에 반영하여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의원입법인 경우 의원은 행정청이 아니며 주민의 대표로서 선거를 통한 의원이 주민을 대리하게 되어 민주적 정당성을 지닌다고 보아 입법예고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 따라서 두 제도는 주민의 의견수렴 측면에서는 유사하나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음.

	입법예고	조례안 예고
법적근거	행정절차법, 법제업무 운영규정	지방자치법
예고대상	조례안 및 규칙안	조례안
예고자	지방자치단체장(구청장)	지방의회(의장)
예고기간	20일 이상	5일 이상
예고시기	의회 제출 전	의회 제출 후
의견수렴 반영	조례안·규칙안에 반영 가능	위원회 심사 시에 반영 가능

○ 본 규칙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8조의4(조례안 예고)제1항**에서는 심사대상 조례안을 의회 홈페이지에 예고하되, 긴급한 경우 등에는 조례안 예고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생략 규정은 회기 10일 전에 의안을 제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10일이 지나 제출된 경우를 염두에 둔 것으로

로 보임. 제2항의 규정 중 회의규칙의 다른 조문⁴⁾에서는 ‘주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통일성을 위해 ‘구민’ 보다는 ‘주민’이 바람직해 보임. 제5항에서는 소관 위원회 위원은 제출의견을 심사 시에 참고하고 심사보고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제4항에서 ‘위원회에 통지’ 한다는 규정과 제5항의 심사보고는 해당 ‘위원회 명의’로 의장에게 보고 된다는 점, 위원회의 의결은 위원 개인 각자 의사가 아니라 회의체인 위원회 전체의사로 결정된다는 점, 조례안 예고는 심사보고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는 점, 위원회 의결은 자율권을 갖는 위원회 고유권한이라는 점을 종합해 보면 강행규정보다는 권한부여방식인 임의규정으로 <예시>⁵⁾와 같이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다. 종합의견

○ 본 개정규칙안은 입법예고 후 의회에 제출한 조례안에 대해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한 부분도 의회에서 이를 반영할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의원입법은 입법예고 제도가 없는 점을 보완하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고 보이는 바 개정규칙안은 늦었지만 의원입법을 통하여 주민의 권익증진을 실현하는 행정서비스 제공에 그 의미가 있다고 보임. 다만, 일부 조문에 대해서는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4)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2(주민조례청구 청구인명부 이의신청)
제18조의3(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및 각하)

제32조의3(방청인 소개) 의장은 지역주민, 단체, 협회 등 5명 이상의 단체방문객이 의회의 회의를 방청하게 된 때에는 회의 개의 직후 또는 산회 직전에 방청인을 소개하는 발언을 할 수 있다.

제47조(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 ① 회의록은 의원에게 배부하고 주민에게 공개한다.

5) <예시>

⑤ 소관 위원회는 의견제출자의 의견을 해당 조례안의 심사에 참고하고, 그 의견을 심사보고에 포함할 수 있다.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 요지 : “생략”

6. 심사 결과 : “수정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사항 : “없음”

- 붙임 1.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수정안
2.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끝.